

#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해외예방접종완료자용 예시)

(앞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체크박스에 체크 필수!

※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는 위 항목에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YOUNGHEE KIM	성별	[ ] 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여
	국적 미국	생년월일	1990년 12월 15일
	여권번호 123456789	휴대전화(본인)	010-0000-0000
		E-mail	ABCGROUP@AAA.COM
	체류자격(외국인만) 대상요건 사증 중 택1 예) B1,B2,C3,C4 등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010-0000-0000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서울특별시 00구 0000로 000호텔 (실거주지입력)(전화: 000-0000-0000)		
	분야 IT·정보통신·기초과학 ※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체육, 농림·축산·식품, 건설·교통, 수산·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의약품, 방위산업, 방송, 기타 중 택 1		
	직업(직장/직위명) 기업인INC/ASSISTANT MGR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기업인INC/김면제/010-000-0000	
출발국가 미국	출발일 및 편명 20211220/KE021(해외에서 국내 귀국편)		
국내 입국예정일 20211221(해외에서 국내 귀국일)	격리면제 기간 20211221 - 20211231(입국일-면제종료일)		
국내 출국예정일 20220101(격리면제 후 재출국일)	주요 활동장소 0000소재 000연구소		

격리면제신청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현지에 체류 수출계약 조건을 최종 협의하고 귀국 후 12월 인도기한 계약조건 이행을 위해 장비 제조를 시급하게 마무리하여야 함에 따라 격리면제를 요청함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0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신청일 : 2021년 12월 10일

면제대상자 : YOUNGHEE KIM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기업인 INC 대표자 김면제 (서명 또는 인)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장관귀하

주 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 총영사귀하

·출발국 소재지 대한민국 재외공관명 기재

접수자	(○○○부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며 향후 이를 어길 시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①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②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8일 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③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기 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신청일 : 2021년 12월 10일  
면제대상자 : YOUNGHEE KIM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장관귀하  
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 귀하**

### 〈서식-3〉 서약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에 한함)

본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제11조, 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신청일 : 2021 년 12 월 10 일  
면제대상자 : YOUNGHEE KIM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장관 귀하**  
**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 영사 귀하**

※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서 내용 추가 가능

## 〈서식-4〉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김면제)은 (미국) YOUNGHEE KIM(901215, 여) 등 ○인(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8일 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신청일 : 2021년 12월 10일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김 면제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장관 귀하

<참고> 신청 공문 예시

(주)0000

수신 산업통상자원부(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장관

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신청 건

우리 기업은 000사와 투자 계약 진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귀 부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출장자(다수인 경우 나열), 출장국가,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지격리유무 및 기간 등 기재

붙임 : 격리면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0000 대표이사

회사직  
인

담당자 000 과장

전화번호 02-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00로 000번길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 체류지 숙박 계약서 사본(사택또는 자택 체류 시 공문) / 호텔 예약 확인증
- 방역대책 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증빙서류 작성/첨부>

<참고> 사택또는 자택 체류 시 제출 공문 예시

(주)0000

수신 산업통상자원부(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장관

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사택 체류 증빙 건

---

우리 기업이 신청한 격리면제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 체류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가. 체 류 지 : 사택(서울특별시 00구 0000로 00길 0000)
- 나. 방 역 : 서식3에 의거 철저히 수행
- 다. 이동수단 : 법인 차량
- 라. 기타사항 :

(주)0000 대표이사

회사직  
인

---

담당자 000 과장

전화번호 02-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00로 000번길

○ 면제대상자 여권사본

<증빙서류 작성/첨부>

○ 항공권 예약 사본

※ 항공편 예약서류 또는 탑승권 관련 참고자료 (개인별로 작성/첨부)

<증빙서류 작성/첨부>

○ 초청기업 또는 소속 기업 현황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작성/첨부>

○ 재직증명서(내국인만 제출, 외국인은 제출 불필요)

<증빙서류 작성/첨부>

○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카드 등)

<증빙서류 작성/첨부>